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79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권향엽·진성준·박해철
양부남·정진욱·고민정
박지원·최민희·조인철
이기현·전진숙·김 윤
김영환·문진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계약의 해제) 소비자는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에 관한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상품등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상품등의 거래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손해배상</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손해배상 등</u></p> <p><u>제11조의2(계약의 해제) 소비자는</u> <u>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에</u> <u>관한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u> <u>· 광고 행위로 상품등의 거래</u> <u>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품등을</u> <u>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u> <u>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u> <u>할 수 있다.</u></p>